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중단 시민보고대회

2019.09.17. 11:00, 경실련 강당

보고대회 개요

- 일 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 사 회 • 김대훈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장
- 발 표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국민청원 경과 및 사회적협의회 구성’
 •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 ‘사회적협의회 진행 경과’
- 입장발표 •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사회적협의회 중단 입장’
- 발언 •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집행위원장
 •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 참석자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GMO 사회적협의체 중단 시민보고대회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회 경과보고-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김대훈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장
발 표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회 구성” 문재형 한살림 ·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사회적협의회 진행 경과”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사회적협의회 종료 입장”
발언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농민의 길,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살림 · GMO반대전국행동

목 차

1. 입장문.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4
2. 발표.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7
3. 발표.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 27
4. 별첨. 회의록	/ 31
5. 별첨. 운영규정	/ 62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중단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입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 동기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는 2018년 4월 ’GMO 완전 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21만 명 참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를 논의하고자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협의회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식약처와 농림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청와대 답변과 달리, ‘GMO 완전표시’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소비자단체(청원 주체 단체)와 ‘GMO 완전표시’를 반대하고 있는 식품산업계로만 이루어져 구성 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2. 협의체 중단 요청 배경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단계적 제도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9차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산업계는 사회적협의회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청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세웠다.

시민·소비자단체는 국민청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하며, 완전표시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내외 현 상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GMO 표시제도를 개선한다 치더라도 향후 완전 표시제를 담보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국민청원에 참여한 시민·소비자단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산업계는 국민청원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소비자단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산업계의 피해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대책과 개선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표시제 도입이 아닌, 완전표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GMO 완전표시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업계와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청원에 따라 참여한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을 위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적협의회의 참여가 무의미해 사회적협의회의 중단을 요청하게 되었다.

3.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정부 노력 부족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다.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의도적흔입치를 현행 3%에서 0.9%로 인하하고, 비의도적흔입치 내의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애초 청와대 답변과 달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사회적협의회

뒤에 숨어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가 합의하라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당사자로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형태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논의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4.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GMO 정책 촉구한다.

GMO가 수입되어 우리 밥상에 오른 지 30년이 지났고,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요구도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접근했다.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이다. 엉터리 GMO 표시제도로 인한 국민 불신과 갈등,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반복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진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발표 1. 국민청원과 사회적협의회 구성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1. 사라진 유전자변형(GMO)농산물

/ GMO 수입현황 (식용농산물)

구분	총계 (ton)	대두	옥수수	기타
'15년	2,181,049	1,062,136	1,118,435	478,000
'16년	2,114,367	982,000	1,131,893	473,450
'17년	2,212,752	1,306,120	1,176,313	318,980

/ 누가 수입하나?

5대 식품대기업 **99.99%** 수입



GMO 수입현황 (가공식품)

구분	총계 (ton)	증가율(%)
'15년	19,026	-
'16년	26,426	140
'17년	78,991	299

누가 수입하나?

상위 5개 업체가 **30%** 수입



오성물산

모노링크

• 2017년 GMO표시실태 조사

구분	세부품목	조사 수량	GMO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68개	1개 (시리얼 제품)
두부류	두부	13개	없음
두유류	두유	18개	없음
라면류	라면	36개	없음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23개	없음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7개	없음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23개	1개 (미소제품)
통조림류	참치, 꽁치, 생선 통조림	30개	없음
총계		438개	2개

• 2014년 GMO표시실태 조사

구분	세부품목	조사 수량	GMO표시
과자류	과자, 팝콘, 시리얼, 빵	187개	1개 (시리얼 제품)
두부류	두부	30개	없음
두유류	두유	50개	없음
라면류	라면	93개	없음
식용유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43개	없음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요리당 등	23개	없음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111개	없음
통조림류	참치, 꽁치, 생선 통조림	43개	없음
총계		580개	1개



2. 현행 GMO 표시제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 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개정 2013.3.23.>

- 유전자변형 표시에 관한 고시 표시예외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구분	표시 기준	GMO 표시	NON-GMO 표시	
유럽	원료기반	GMO 표시 (0.9% 이상)	NON-GMO (0.9% 이내 자율표시)	
프랑스	원료기반	GMO 표시 (0.9% 이상)	무표시 (0.9% 이내)	NON-GMO (0.1% 이내)
독일	원료기반	GMO 표시 (0.9% 이상)	무표시 (0.9% 이내)	GMO-Free (0%)
미국	GMO DNA, 단백질 검출	GMO 표시 (0.9% 이상)	NON-GMO (0.9% 이내 자율표시)	
호주	GMO DNA, 단백질 검출	GMO 표시 (0.9% 이상)	NON-GMO (0.9% 이내 자율표시)	
일본	GMO DNA, 단백질 검출	GMO 표시 (5.0% 이상)	NON-GMO (5.0% 이내 자율표시)	
한국	GMO DNA, 단백질 검출	GMO 표시 (3.0% 이상)	무표시 (3.0% 이내)	NON-GMO (0%)

사회적 검증

+

과학적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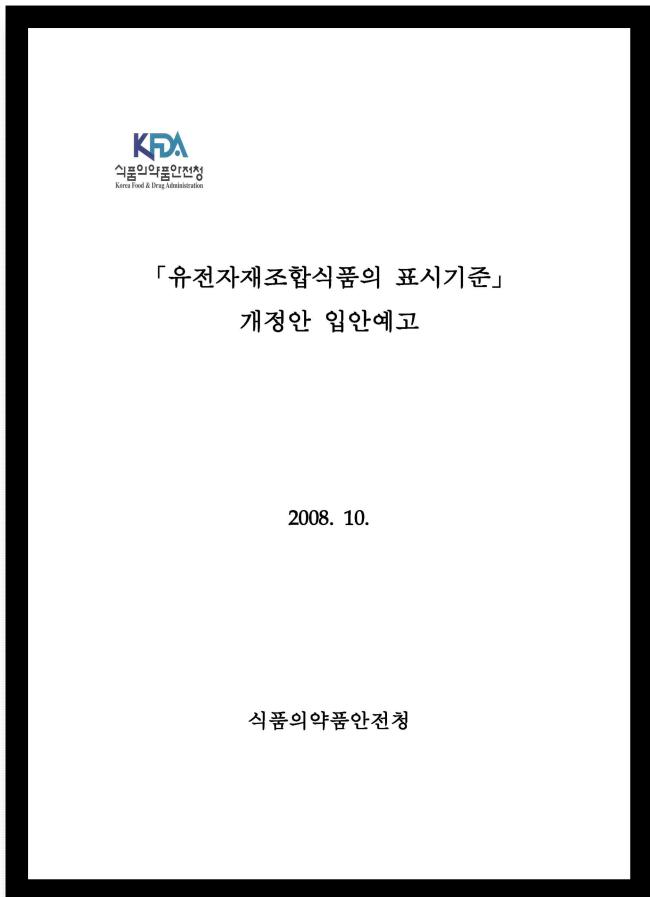
정부증명서·구분유통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GMO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제품들도 사회적 검증(서류 검증)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표시가능하다”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심사결과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이 승인된 품목이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생산·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말한다. 단,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 이하인 농산물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생산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아니 할 수 있다.

3.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원종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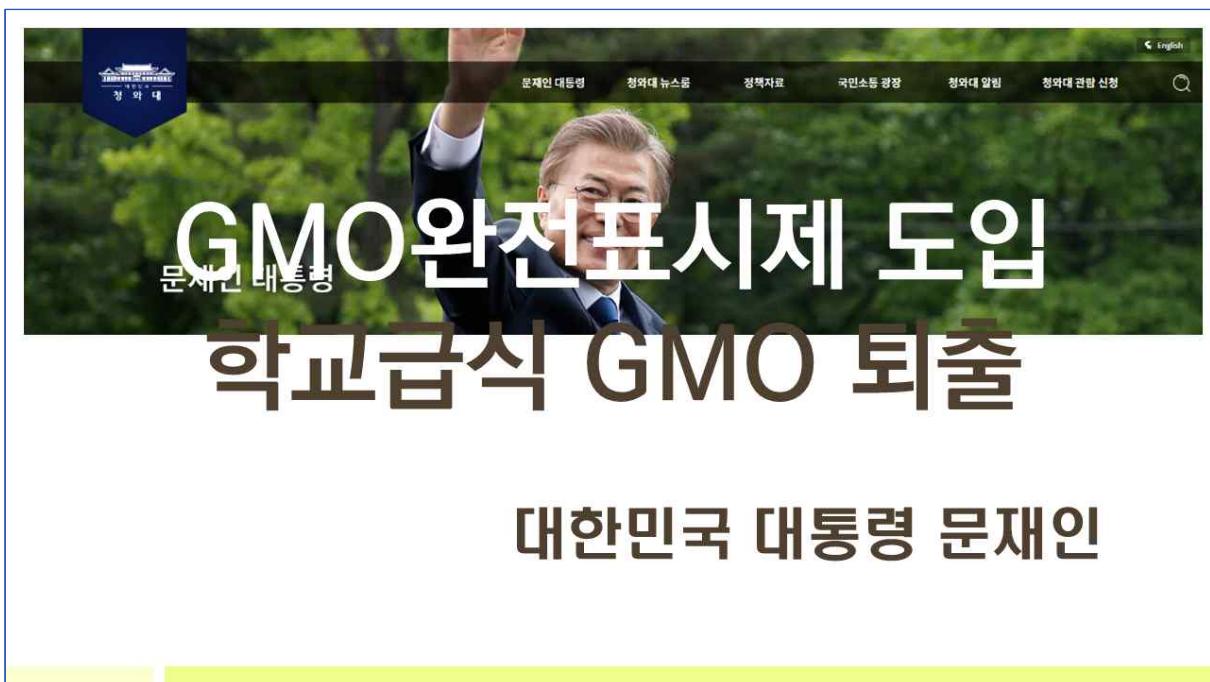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3-12
- 청원인 [facebook](#) - ★★★
- 청원마감 2018-04-11

종료됨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216,886 명



○ 공약

- GMO 표시제 강화, 식품 표시제도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소비자·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음. 아울러 GMO 식재료는 학교, 어린이집 급식에서 제외시킬 것임.
-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연합(EU)수준인 0.9% 낮추는 것에 동의함
- 비의도적혼입치가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에 동의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9-2.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국민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kg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시를 해달라는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학교급식에서 GMO식품 퇴출		
문제인	찬성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 5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2018.03.12
청와대 앞

GMO완전표시제 촉구 청와

A large crowd of people, mostly women, are gathered outdoors holding signs and banners. In the foreground, a man in a tan trench coat holds up a box labeled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To his right, a woman in a brown coat holds a child who is wearing a mask with the text 'GMO' on it. Other signs include 'GMO 반대입니다!' (We oppose GM), 'GMO 0원 도입! 학자금' (Import GM 0 won! Student Loan), and 'GMO?? 난 GMO' (Am I GM?). A yellow banner at the bottom right reads '시 | 2018년 3월' (March 2018).

20 만 청와대 청원을 위한 시민 행동
- GMO완전표시제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

GMO 표시 강화, 학교급식에서의 GMO 금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청원 기간 18년 3월 12일~4월 11일)

- 1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 2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 3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청와대 청원 방법

1.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서 'GMO완전표시제' 검색 또는 QR 코드로 링크 열기
2.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제목 꾀! 확인
3. 등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동의합니다' 입력
4. '동의합니다' 입력되면 청원 완료!

경실련 X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한국의 GMO 표시제는 짹퉁

표시된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GMO 식품원료 수입은 약 228만톤*

VS

GMO 표시된 제품은 0건

* 2017년 한국비비안전감독원

한국의 GMO 표시제는 짹퉁

표시된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GMO 식품원료 수입은 **228만 톤 ***
GMO 표시된 제품은 **0개**

* 2017년 원자력미오한전상정보센터



GMO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GMO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기간: 3/12~4/11)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국민청원
→'GMO완전표시제'를 검색하세요.

→ GMO완전표시제를 홍보해요
광고와 홍보는 www.president.go.kr →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요청

대한민국 청와대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해 주십시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청원
서명하기





〈 청원대 국민청원 답변 ① 〉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합니다. Non 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대두 자급률은 9.4%, 옥수수는 0.8%에 불과합니다. Non GMO 옥수수 가격은 GMO 대비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이 있습니다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다만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습니다. 또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청원대 국민청원 답변 ② 〉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자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GMO 농축산물은 유통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은 전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입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대두, 옥수수 등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모두 Non GMO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표시해야 하냐, 각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GMO 단백질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제품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0.9% 이내의 GMO 훈입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Non-GMO 표시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8.05.09.

청와대 앞

날짜	내용
2018.03.12.	GMO 완전표시제 및 GMO 학교급식 금지 국민청원 시작
2018.03.31.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참여자 10만 명 돌파
2018.04.02.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집중캠페인 전개
2018.04.09.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참여자 20만 명 돌파
2018.04.11.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마감. 총 216,886명 참여
2018.04.25.	국민청원 청와대 간담회 개최
2018.05.08.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2018.05.09.	청와대 답변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8.05.15.	식약처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해산
2018.05.17.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 평가토론회 개최

4.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구성

〈 청원대 국민청원 답변 중 〉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

-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약처와 농림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협의체에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물가인상, 통상마찰 등 우려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가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도 청원에 참여한 소비자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 · 운영」

용역 체결

2018.08.01.

식약처 GMO표시개선 협의체 민간위탁에 논평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청와대, 국회, 사회부, NGO 담당

발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문의 : 윤철한 010-3459-1109

일자 : 2018.08.03. (총 2장)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 논 평 >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시민들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출범

2018.12.12.



	보도자료	제 1 차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출범식(초기 회의)
	날짜 (대표)	2018.12.12.(수)
	담당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한증과 오정원 과장(043-719-2851/043-719-2185) (서) 한국갈등해결센터 김영진 대표 (02-598-8217)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관련 사회적 협의체 출범

- GMO 표시제 개선 방안 마련 및 사회적 논의 시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사)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강영진)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구성을 완료하여 12월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 이번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 5월 8일 발표함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57개 단체로 이루어진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청와대에 GMO 유전자(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GMO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는 국민청원 제출

○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국민청원 참여단체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계층 간 위화감 조성·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협의를 더욱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 지난 7월 16일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 GMO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의 책임을 맡은 강영진 대표는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성 했다”고 밝혔습니다.

○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정례회의(1회/2주)를 개최할 계획이며,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와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협의체가 충실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의 결과를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산업계
•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 한국식품산업협회
• 농민의 길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한국대두가공협회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장류협동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 대상
•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 인그리디언코리아
•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 삼양사

GMO표시제도 검토협의체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식약처	운영 주체	한국갈등해결센터
자문	법적 지위	권고
2013년 10월~2018년 05월	운영 기간	2018년 12월~2019년 08월
20명		16명
식약처 지명	구 성	소비자·시민·학부모·종교·농민단체 추천
산업계(8) + 소비자단체(8) + 전문가(4)		산업계(8) + 소비자·시민단체(8)
		정부 · 전문가 배제
비공개 · 주장	운영 방식	공개 · 자료
비정기	운영 주기	정기
총 32회	회의 개최	총 9회

발표2. GMO 사회적협의체 진행경과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담당 주무부처 식약처 없이 식품업계와 GMO완전표시제 논의

약 22만 명(216,886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이후 진행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들이 요구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처음 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담당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뒷전으로 빠진 채 용역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한 사안을 정부 부처가 아닌 식품업계와 논의한다는 점에 대해 의아해했었고 문제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시민사회 대표자 8인은 국민청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협의체에 임했지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고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식품업계의 입장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13일까지 9차 회의가 진행되었던 사회적협의체의 진행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협의체 구성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경실련, 농민의길,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탈GMO기독교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각 단체별 1인씩 8인이 참가를 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요구받는 식품업계에서는 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각 단체별 1인씩 8인이 참가를 했습니다.

총 9회 차 회의를 진행하며 핵심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료기반의 GMO완전표시제를 식품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GMO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시민사회단체는 연간 1천만 톤의 식품용·농업용(사료용)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지만 표시제 미비로 실제 표시가 되고 있는 제품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GMO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식품업계,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소비자의 비 선택’ 우려 크다고 하지만

이에 식품업계에서는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국내 업체는 Non-GMO 원물을 사용할 경우 비용부담, 원물 구입 절차 복잡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이에 반해 외국 업체는 최종 원물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아 GMO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제품군의 경우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Non-GMO 표기를 해 국내에 들여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제품은 가격 유리성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수입제품과의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GMO라고 표기할 경우 GMO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해당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이후 관련한 기업이 타격을 받는 ‘소비자 비 선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식품업계 의지가 있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식품업계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였고 지금 당장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식품업계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식품업계가 GMO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식품업계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도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또한 ‘수입제품과의 역차별’은 외국 업체 서류를 철저하게 검사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하는 방법도 함께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소비자 비 선택’의 우려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언제나 요구받는 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며 또한, GMO가 표시된 제품을 시중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 선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GMO완전표시제는 위 사항들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또 다른 내용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도 못 했습니다.

식약처가 GMO완전표시제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 들어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이 선점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을 고수하고 좀 더 값싸고 구하기 쉬운 원재료들을 선택하는 게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인 식약처가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역할이 컸지만, 식약처는 협의체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국장은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기존 GMO 표시제 강화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발언은 물론, 가격상승 등 식품업계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펼쳐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요구인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식품업계와의 이견 좁힐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회적협의체 중단할 수밖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 사회적협의체에 참가했던 시민사회단체 8인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협의체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식약처 없이 식품업계와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9회 차 회의결과가 말해 주듯이 끝없는 출다리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무리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체 중단되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GMO완전표시제 실행을 위해 식품업계와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힘차고 세밀하게 원료기반의 GMO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첨 1. 회의록

<1차회의록>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출범식 및 1차회의 결과 요지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14:00~16:20
- 장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서울시 서초동)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6명 전원(대리참석 2인), 위원장 및 연구진 2명

□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요지)

■ 위원들의 자기소개, 희망사항 피력

- 각 위원의 자기소개
- 협의회에 거는 기대, 희망사항 등 피력

■ 향후 협의회의 운영, 진행방법 등에 대한 논의

- 식약처의 참여문제, 협의체의 위상/성격, 식약처 - 한국갈등해결센터 - 협의회 3자간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 또는 문제제기 있었음
 - 식약처는 일각의 오해나 우려를 피하고 협의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배석하지 않고 협의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 전달
 - 협의회에 관한 모든 것은 위원들이 주체이며, 식약처는 GMO표시제 관련 정책 주무부처로서 협의회를 지원하고 활동 결과 권고안이 도출되면 이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며,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전문기관으로서 협의체 구성·운영이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
- 본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식약처의 방침이 적시된 보도자료 내용 확인
- 향후 협의회 활동의 기본 전제-방향에 대한 논의
 - GMO 표시제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협의 진행하려 해서는 안된다 는 점 강조

■ 협의회 명칭 및 운영규정 검토

- 협의체 명칭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로 하기로 결정
- 연구진이 준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운영규정(안) 검토 및 승인
 - 검토 과정에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아무런 수정 없이 운영규정(안)의 모든 내용을 원안 그대로 승인하기로 함
- 운영규정에 대한 위원들의 서명은 다음 회의에서 하기로 함
 - 본 협의회의 위상과 향후 지속운영 등에 대한 식약처의 확약이 제시되는 것을 보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서명하겠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 제시돼 그렇게 하기로 함

■ 차기 회의 일정

- 2차 회의 일정 및 장소
 - 12월 28일(금) 10:00~13:00 (3시간)
 - 장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 이후 회의 일정
 - 2019년 1월부터 매월 2, 4주 금요일 15:00~18:00 (3시간)

■ 다음 회의 의제, 할 일

-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 논의대상 및 범주 등
- 기존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 검토 및 참고
 - 과거 운영됐던 『GMO 표시제 검토협의체』에서 이미 논의되고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논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검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이 있다면 연구진이 입수해서 위원들이 모두 회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위원장은 협의체의 지속운영 및 결과 반영 문제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 어떤 형태로든 답을 받아올 것을 요청받고 그렇게 하기로 함

■ 별첨 : 1차회의에서 검토·승인된 『협의회 운영규정』(확정본)

<2차 회의결과 요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2차회의

- 일 시 : 2018년 12월 28일(금) 10:00~11:40
- 장 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서울시 서초동)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5인(대리참석 2인, 결석 1), 위원장 및 연구진

□ 회의 주요 결과(요지)

1. 1차 회의 회의록 승인

- 사전에 이메일로 회람한 회의록 내용에 대해 아무 이의없음 확인, 승인

2. 식약처 확약 요청사항 결과보고 및 논의

- 1차회의에서 위원들이 협의회 운영기간, 결과반영 문제 등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확약을 받아오라고 한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장이 결과 보고
- 식약처에서 공문 등으로 직접 확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대신 식약처에서 제시한 관련 예산항목 문서와 보도자료 등으로 확인
- 그 대신, 위원들이 분명히 해주길 요청하는 사항을 협의회 운영규정에 포함하기로 함
 - 1차회의에서 운영규정에 대해 검토-논의할 때, 식약처의 확약을 받아오는 조건부로 운영규정에 서명하겠다고 얘기된 바 있음

3. 협의회 운영규정(보완본) 검토-승인-서명으로 최종 확정

- 위원들의 요청으로 보완한 운영규정(안) 검토, 일부 문무 수정해 최종 승인
- 지난 1차회의에서 운영규정 검토한 후 추가로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영규정 서두에 국민청원 등 협의회 구성-운영의 배경 및 출발점 적시
 - 제6조(운영기간)에 “충실한 협의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문구 보완
 - 제11조(활동 결과)에 (결론이 도출되면 권고안의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는 문구 보완

- 운영규정 서두의 문구 수정
 - 연구진이 마련한 규정(안) 중 “GMO 표시제 관련 국민청원”이란 문구는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으로 바꾸도록 함
 - 다만, 향후 협의회에서의 논의는 완전표시제에 국한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로 함
- 운영규정 유인물(확정본)에 참석 위원(15인 및 위원장) 전원이 서명함으로써 협의회 운영규정이 최종 확정됨

4. 향후 협의회 논의 의제 및 운영방법

-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와 운영방법 등에 대해 논의
- 위원들 요청으로, 위원장은 사전에 작성한 의제(안)을 다음과 같이 예시

GMO 표시제 개선방안 관련 가능한 의제(안)

- GMO 표시제 현황 파악-공유, 주요 용어 문제 등 정리
- GMO 표시제 관련 해외 사례 및 동향
 - 일본의 최근 협의체 운영과정-결과 등 선진국의 관련 사안 논의 사례 등
- GMO 표시제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검토
 - 표시제도 관련 각 그룹의 입장, 문제점과 우려, 해소방안 등
- 완전표시제 도입-시행시 그에 따른 식품업계 영향, 문제점
 - 식품안전정보원의 관련 연구 결과 보고, 검토
- 향후 정책 시나리오별 대안-보완책 검토
 - 완전표시제 도입시 관련 업계 영향 최소화 방안, 정책적 지원 방안 등
 - 완전표시제 미도입시 대안, 식품안전 강화 방안 등
 - 점진적 도입방안 등 공공선에 부합하는 제3의 대안 모색 등
- 미합의시 대안, 향후 정책방향 설정 위한 절차적 합의 모색
 - 공론화를 거쳐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정책방향 도출 방안 등

- 식품업계와 시민단체 양측은 의제 및 협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안을 다음 회의 1주일 전(1/24)까지 마련해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함
 - 위원장이 양측 안을 취합해 다음 회의(1/31) 전에 위원들에게 회람
- 이후 회의할 때 의제별 회의자료는 기본적으로 연구진(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준비하도록 함
 - 위 의제들(안) 중 특히 △GMO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 해외사례 △일본, 유럽의 GMO 표시제 관련 협의회 운영사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연구진이 준비해 발표해줄 것을 위원들이 요청함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함
- 향후 위원들간 논의 및 자료공유의 편의를 위해 연구진이 온라인 카페(비공개. 접속 및 이용은 위원들로만 제한)를 개설·운영하도록 하되, 위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가입 및 이용은 위원들 재량에 맡기기로 함

5. 기존의 검토협의체 회의록 요청 건

- 향후 효율적 협의 위해 식약처에 과거 협의체 회의록 협조 요청한 건 결과 보고
 - 위원장 : 식약처에 요청했는데,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이 없다고 함
- 위원들은 과거 검토협의체 36차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참고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함
 - 위원들은 회의록이 있었을 것이며 국회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위원장이 재차 식약처에 요청하도록 요구함
 - 그에 대해 위원장이 다시 한번 식약처에 알아보고 참고할 자료 요청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알려주기로 함

6. 향후(2019년도) 회의 일정 조정 및 확정

- 1월 : 3차 회의. 1월 31일(목) 오후 2~5시
- 2월 : 4, 5차 회의. 2월 14, 28일(목) 오후 2~5시
- 3월부터 매주 1, 3주 목요일 오후 2~5시
(단, 공휴일일 경우 조정. 6월 13, 27일. 8월 8, 22일. 10월 10, 24일)

<첨부> 협의회 2차 회의 참석자 명단

<별첨> 2차회의에서 확정한 『협의회 운영규정』(최종확정본)

<3차 회의결과 요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3차회의

- 일 시 : 2019년 1월 31일(목) 14:00~17:00
- 장 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서울시 서초동)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3인(대리참석 2인, 결석 3), 위원장 및 연구진

□ 회의 주요 결과(요지)

1. 2차 회의 회의록 승인, 운영규정 전원 서명 완료

- 사전에 이메일로 회람한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없음 확인 및 승인
- 2차회의 때 검토-확정-서명한 운영규정에 대해 당시 참석 못했던 오세영 위원도 서명함으로써 전원 서명 완료

2. 협의회 운영·지원 관련 요구·제안 사항

- 회의수당 지급문제 :
 - 시민단체들, 정부 관련 회의 참가시 회의수당 받는 게 관례임
 - 회의수당 지급문제는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식약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함
- 회의 지원사항 :
 - 다음 회의 안내, 1주일 전에 공지해줄 것
 - 전회 회의록 검토 위해 이메일 회람 외에 인쇄물로 준비해줄 것 등
- 협의 참고자료 요청 :
 - 향후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기준의 검토협의체 등에서 논의되거나 생산·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정 주제별로 협의회 차원에서 식약처에 공식 요구하기로 함

3. 과거 검토협의체의 논의경과

- 과거 식약처에서 구성-운영한 「GMO표시제도 개선 검토협의체」의 논의경과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 5년간(2013.05.08.~2018.05.15.) 총 31회 회의(서면회의 3회 포함)
- 구성 : 소비자단체 8명, 산업계 8명, 학계 4명 등 총 20명
- 논의 결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다음 두가지 정도
 - GMO의 우리말 용어 통일안을 “유전자변형”으로 하기로 함
 - 영향성분이 강화된 GM 콩(농산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사로 관리 가능하므로 강화된 영양성분과 GMO임을 함께 표시하는 데 합의

4.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협의

- 협의회의 논의 범위에 대한 기본 전제-원칙 :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완전표시제’에 국한하지 않고, 열린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의제 설정할 때, GMO 표시제도에 대한 본안과 그 논의를 원만히 하는 데 필요한 검토-점검 사항을 구분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민단체와 식품업계에서 각각 준비한 의제(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토론
- 시민단체의 의제안에 대해 식품업계측은 일부(‘종교적 측면’) 제외하고 가급적 모두 열어놓고 의제로 삼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생명-종교적 측면’의 의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있었으나,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 중 하나로서 ‘종교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수긍함
- 시민단체는 완전표시제 시행할 경우 가격인상 및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객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 식품정보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가급적 조속히 보고받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 식품업계의 의제안 중 ‘용어’ 문제와 ‘GMO 안전성 검토’ 문제에 대해 논의
 - **용어 문제** : USDA에서 GMO를 「Bioengineered Food」라고 하는 등 용어 검토-정리 필요하다는 의견. 용어问题是 별도로 논의하기보다는, 해외 동향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기로 함
 - **안전성 문제** : 표시제 개선의 이면에는 GMO 안전성 문제가 깔려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본 협의회의 한계 밖이므로, 그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차원 정도에서 의제로 삼기로 함

5.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할 분야별 의제 내용

	시민단체 제안	식품업계 제안
현황 실태	<p>법령 현황 <input type="radio"/> 현행 표시제도, 입법동향 등</p> <p>실태 점검 <input type="radio"/> GMO 농산물, 가공식품 수입 및 표시 실태 <input type="radio"/> 주요 GMO표시제도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 <input type="radio"/> 식약처 GMO표시제도 관련 논의기구 - 역대 논의기구 운영현황 - GMO표시제도 개선 검토협의체 논의 경과</p>	
해외 사례 동향	<p>해외 사례 및 동향 - 해외 법제 현황 - 해외 GMO 표시제도 관련 협의체 운영 사례 - 대만 학교급식 GMO퇴출 사례</p>	<p>GMO 표시제 각국별 현황 ① 미국, 일본, EU, 대만 등 ② 비교 주제 : - GMO 표시제 현황 및 관리 - GMO 작물 재배현황과 곡물수급 현황(국가경쟁력 관계 포함) - 비의도적 혼입차 각국 사례 ③ 주요 GMO 재배국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용</p> <p>⇒ 용어문제 동향</p>
표시제 개선 과제	<input type="radio"/> 비의도적혼입차 인정비율 <input type="radio"/> NON-GMO, GMO-free 표시 허용기준 <input type="radio"/> 완전표시제	
표시제 개선 대상	<input type="radio"/> 표시의무자 확대(식품접객업소) <input type="radio"/> 영양성분 강화된 가공식품 GMO표시 <input type="radio"/> GMO 표시대상 작물	GMO 표시제 표시범주 - 축산물과 의약품 등 연관된 타산업군에서의 표시여부까지
관련 정책 사안	GMO 학교급식 퇴출	GMO 완전표시 관리 및 신뢰성 문제
사회 경제적 영향	<input type="radio"/> 가격인상 <input type="radio"/> 통상마찰	<input type="radio"/> GMO 표시확대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input type="radio"/> 식량안보의 문제 <input type="radio"/> 수입식품과의 역차별 문제 <input type="radio"/> 중소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input type="radio"/> 소비양극화로 사회적 갈등문제

	시민단체 제안	식품업계 제안
관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에 대한 소비자인식도조사 	<p>GMO 안전성 재검토 ① 인도의 GM 면화 ② 세라리니의 실험(장기 섭취 등) ③ 글리포세이트가 GMO보다 위험 ④ 노벨상수상자 113명 GMO 반대운동 중단서명 * 현재의 소비자 불신이 GMO안전성에 서부터 연유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 조 빙 등을 통한 실제적인 검증 필요(육종학 자, 식품학자 조빙)</p>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종)다양성, 종자 주권 -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농업의 다 원적 기능 ○ 생명·종교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의 온전성, 생명의 가치 - 식품 문화의 차원 	

6. 다음 회의 : 4차회의 일정 및 의제

- 2월 28일(목) 오후 2시
- 주요 의제 :
 - 1) GMO 표시제도의 현황 및 실태
 - 2) GMO 표시제도 해외 사례와 동향
- 회의자료 :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준비해 사전에 회람
- 식약처 요청사항 : 국내 GMO 표시제도 현황 및 실태, 제도도입 배경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직접 브리핑해줄 것을 공식 요청함
- 4차 회의 마친 후 저녁식사 함께하며 위원들간 상호이해, 친목도모 시간 갖기로 함

<첨부> 협의회 3차회의 참석자 명단

<4차 회의결과 요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4차회의

- 일 시 : 2019년 2월 28일(목) 14: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4인(불참 2), 위원장 및 연구진

□ 회의 주요 결과(요지)

1.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의 협의회 방문 및 인사말

- 본 회의 시작 전 한상배 국장이 협의회 방문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표함
-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식약처 입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위원 질문
 - 해당 언급을 한 전 국장의 발언취지는 “대통령의 공약이 GMO 완전표시제가 아니라 GMO 표시제도 강화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

2. [본의제] 국내 GMO 표시제도 경과 및 현황

-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남혜선 연구관 :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 GMO 표시제도 변천과정과 현행 표시제도 주요 내용 브리핑
- 이후 남혜선 연구관과 안현주 연구사가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
-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GMO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며 현행 표시제도가 실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과 질의, 논의가 이어짐
- 표시제도 개선과 이행실태 문제는 식약처의 담당 부서도 다르고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란 답변/의견 제시됨
- 정부에서 새로운 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면 자연히 그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 문제가 따르게 되며 정부나 업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이어야 함.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게 되면 비용만 들 뿐, 책임을 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됨

3. 협의회 운영 관련

- 소비자·시민단체 측 위원들은, GMO 표시제 문제에 대해 식품업계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본 협의회 구성·운영의 타당성·실효성 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의식 갖고 있다며 조만간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함
 - 위원장 : 그 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 준비단계에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식품업계 모두 의문을 표하고 소극적·부정적이기도 했으나 오랜 논의 끝에 제반 여건을 감안해 양측에서 협의회 구성·운영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로 한 것임. 아울러, 그간 협의회 운영규정을 함께 만들어 서명하고 지난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할 의제도 설정했음. 협의회 논의 내용 면에서도 지금까지는 운영규정 등 절차적 논의 먼저 하느라 실효성 면에서 회의적일 수 있으나 다음 회의부터 바로 표시제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가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소비자·시민단체 측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논의한 후 위원장에게 알려주기로 함
- 회의수당 지급 관련 :
 - 지난번 논의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려고 함
 - 이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서명함
 - 기준에 정해진 연구비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집행해야 하기에 대관료 등 다른 경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며 그에 따라 향후 회의장소도 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강남 선릉역 근처)을 사용하는 데 대해 양해하기로 함

4. 다음 회의 : 5차회의 일정 및 의제

- 3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 (선릉역 근처)
- 주요 의제 : 소비자·시민단체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요구에 대해
 - 1)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내용
 - 2) GMO 완전표시제 도입·시행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 3) 이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의견(제도상 문제점, 부정적 영향, 우려사항 등)
- 회의자료 : 소비자·시민단체에서 준비해 사전에 회람
 - * GMO 완전표시제 도입시 가격인상 등 사회경제적 영향과 통상마찰 우려 등 의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추후(6차회의) 식품안전정보원의 연구결과를 브리핑받고 논의하도록 함

<5차 회의결과 요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5차회의

- 일 시 : 2019년 3월 21일(목) 14:00~17:00
- 장 소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4인(불참 2), 위원장 및 연구진

□ 회의 주요 결과(요지)

1. 4차 회의 회의록 검토 및 승인

- 사전에 이메일로 회람한 4차회의 회의록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없음 확인하고 승인함

2. [본의제]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내용 및 검토

□ 소비자-시민단체의 GMO표시제 개선방안 발표

- 국민청원단이 추진해온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내용, 도입 이유 및 근거 등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측을 대표해 윤철한 위원(경실련 정책실장)이 발표
 - 이하(고딕체)는 발표 내용 요지
 - * 발표 내용 전문은 본 회의록에 별도로 첨부 :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란 제목의 ppt자료 및 한글파일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발표

- 발표 주제 :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주요 쟁점 중심으로 발표
- 협의회가 만들어진 근간 : 국민청원을 통해 약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완전표시제 시행 요청
- 왜 필요한지 묻는다면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가 알고 싶고, 소비자가 선택해서 먹기 위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음

○ GMO 및 표시제도 관련 현황

□ GMO 수입현황

- ◉ 식용 : 우리나라를 사료 및 식용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함, 식용으로 연간 200만 톤이 넘으며 환산할 경우, 한 가구당 45% 정도 소비 될 것으로 추정
- ◉ 가공식품 : 상위 5개 업체가 30% 정도 수입하고 있으며, 증가율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음

□ GMO 표시 현황

◉ GMO 표시실태(2014-2017)

- 2014년, 2017년 자료에서 GMO 농산물이 수입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처 궁금함
- 직접(발표자) 대형마트를 다니며 조사한 결과, 2014년 GMO 표시 1개, 2017년 GMO 표시 2개 나옴, 모두 수입 가공식품이며, 연간 2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을 식품 대기업들이 수입·생산한 제품을 사용, GMO 표시는 없으며, 현재도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음

□ GMO 제도 현황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에는 무조건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2016년 개정> ‘다만, 제조 가공은 유전자 DNA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 2015년 10월 31일 국회 통과됐고, 2월 3일부터 시행 됨, 통과될 때 국회 논의는 시민단체들이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니, 완전표시제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점이었음, 12월 31일 수백 개의 법과 함께 한 번도 고시 없던 법안이 고시 통과됨, 통과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알지 못함

◉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고시

- 예외조항이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인 경우,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표시 예외로 규정, 예외규정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GMO가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음
- 제도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입에도 불구하고 표시된 것은 하나도 없음,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먹고 싶은데, 그런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현재 GMO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사료용, 식용, 가공식품은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관리함, 식약처에 신고하고 수입을 하는데, 현재 당류나 유지류 같은 경우에 일체 관리 하지 않음, 수입할 때 신고할 필요도 없음

◉ ICOOP 자료

- 여러 나라의 GMO 표시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원료기반, 호주나 일본, 미국의 경우는 단백질 검출 여부로 함
- 유럽, 미국, 호주, 일본 같은 경우도 GMO 표시하던지 GMO 표시가 안되면, Non GMO 표시를 허용해줌, 소비자 입장에서는 GMO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Non GMO 표시된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를 GMO, non GMO 모두 표시 안됨, 선택의 여지 없음
- 다른 나라도 어쨌든 다양한 형태나 제도적으로 Non GMO 표시를 열어 놔서 최소한 소

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무 표시도 안되어 있음

□ GMO 관리 현실

- GMO는 법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우리나라)
- 수입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자연생태계에 많이 노출됨
- 수입 콩, 두부에서 GMO 검출되고, 재작년에 충격이었던 건 미승인 중국산 유체가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어서 수입업체가 승인되지 않은 것을 수입해서 전국의 유채 축제하는 지자체에 판매·재배하게 하였음,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GMO 유채가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되돌릴 수 없음, GMO 유전자 DNA에 염청나게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생태계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GMO 생명체가 교배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움

□ 식량주권

- GMO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엄청 많음, 전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용량도 늘고 있음, 특정기업, 특정나라에 굉장한 로열티 제공, 재강조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특정나라, 특정기업에 우리가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함

○ 완전표시제 도입 필요성

□ GMO와 관련된 여러 논란

- 여러 논란이 분명히 있음, 안전성, Non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가격, 통상무역마찰, 관리가 어렵다 등등 있음, 필요성보다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 극복할 수 있음
- 생태계적 문제 등은 극복할 수 없음, 이런 것을 고민해주었으면 좋겠음

□ 소비자가 원한다

- 완전표시제 도입의 핵심 요소임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임
- 80% 이상은 표시를 확대해달라는 것, 완전표시제 해달라는 것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인식조사는 하는데, 현재 표시제를 확대해달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있음

□ 다양성

- 소비자 선택권, 알 권리도 있지만, 소비자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임
- 다양한 기업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제품이 있어야만, 경쟁으로 인한 효과가 소비자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임, 단순히 GMO를 먹기 싫어서 알고 싶다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알고 싶다는 것임, 즉 종교적 이유, 환경적인 이유, 종자나 식량문제 때문에 알고 싶은 이유도 있으나, GMO는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되돌릴 수 없음

○ 표시제 개선방향 관련

◉ 공약

- 모든 단체가 제시한 안은 아니며, 소시모와 아이쿱 단체들만 발의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
- 표시제 강화와 더불어 비의도적 혼입치 낮추고 non-GMO 표시 허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힘
- 과거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음

◉ 식약청 입법예고

- 2008년도 식약청이 입법 예고로 한 후, 사회적 검증을 통해서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음
-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으로 판단됨,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 표시제 도입을 하자는 것임

◉ 사회적 검증 + 과학적 검증

- 현재 DNA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과학적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지만, 현재도 정부에서 과학적 관리 못함
- 현재 GMO 관련된 법이나 고시에 따르면, 정부 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서 GMO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예외적으로 시험 및 검사성적서를 통해서 하고 있음
- 최초 고시 논의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음, 두 가지 문구만 있었음, 검사·구분은 나중에 생긴 것임, 모든 시스템이 과학적 검증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 검증으로 식약처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럽 방식 채택, 대표적으로 원산지표시도 같은 방식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회적 검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왜 GMO 농산물을 안될까? 안될 이유가 전혀 없음

◉ 원료기반 GMO표시제

- 최종적으로 0.9% 이상은 원료기반으로 DNA가 남아 있는 남아 있지 않은 상관없이 0.9% 이상은 GMO 표시를 해달라, 비의도적 혼입치가 그리고 0.9% 미만은 Non GMO 표시를 허용해 달라 그리고 0%인 경우에는 GMO FREE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 일부 단체들의 주장임

□ 소비자-시민단체의 GMO표시제 개선방안 발표내용에 대한 논의

- 윤철한 위원의 발표 후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제시 등에 이어 완전 표시제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이어졌음. 이런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뚜렷이 드러나면 추후 각 세부 논점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논의작업을 해나갈 방침
- 위원들 간에 오간 주요 논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GMO 수입현황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

며, 그러면 수입현황 자료가 충실히 공개되도록 해야 함

- 완전표시제에서 제시하는 GMO/non-GMO 기준치 0.9%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특정 수치 자체의 객관적 근거는 없으나 미량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
-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GMO의 안전성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나중에 육종학자 등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검토하자는 의견 제시됨
- 발표자료 중 GMO 표시제도 국제비교 도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보충설명
- 유럽이 엄격한 GMO 표시제를 도입한 데에는 미국에 대항하는 유럽의 농업 상황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렇듯 GMO 표시제도나 혼입치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그 나라 현실에 맞게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
-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려 해도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 그에 대해,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검증으로 보완-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그에 대해, 중국에서 GMO가 non-GMO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이력추적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제시됨
- 모두 통틀어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사안별로 나눠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것, 품목 별로 안되는 것 등을 가려내고, 사회적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중국산 LMO가 들어오는 등의 문제도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결국 식약처와 농림부에 있다는 의견
-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산 식품과는 달리 국내 식품에만 엄격한 표시제도가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식품업계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란 의견
- 국내 식품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거나,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족쇄는 우리 업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 호소 등

3. 협의회 운영 관련 논의

- 소비자·시민단체 측 위원들은 지난 4차 회의 후 따로 모여 향후 협의회 참여

및 운영방식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알려줌

- 소비자·시민단체 측 위원들간 논의 결과, 앞으로 협의회에 계속 참여해 양측 간 협의에 임하기로 했으며, 대신 식약처에 다음 사항에 관한 강력히 의견 전달하기로 했다고 함
 - 이전에 운영된 검토협의체의 기록을 요구했으나 제출 안된 문제 지적
 - 협의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식약처가 협의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대신,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함
- 위원들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해 네이버밴드 개설해 이용하기로 함
- 회의 일정에 대한 혼선 방지 위해 향후 회의 일정 재확인
 - 4월 4, 18일. 5월 2, 16일. 6월 13, 27일. 7월 4, 18일.
 - 8월 8, 22일. 9월 5, 19일. 10월 10, 24일. 11월 7, 21일.
- 앞으로도 협의회 회의 장소는 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을 사용하기로 함
 -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회의부터는 각 위원들의 명패를 만들어 회의장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함 (위원이 원할 경우 실명이 아닌 별칭 사용)

4. 다음 회의 : 6차회의 일정 및 의제

- 4월 4일(목) 오후 2시. 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
- 주요 의제 :
 - 1) GMO 완전표시제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의 실상
 -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시행할 경우 식품가격 인상 등 사회경제적 영향과 통상마찰 등 예상되는 문제의 실상에 대한 식품안전정보원의 연구결과를 브리핑 받고 논의
 - 2) 시간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조사연구 결과도 발표 및 논의
- * 식품안전정보원의 연구결과는 본 협의회 논의에 참고자료의 성격이며,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함
- * 식품안전정보원의 연구결과를 들어보고 판단할 일이긴 하나, 연구결과를 본 협

의회에 브리핑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본 협의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그런 차원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함

- * 다음 회의에서 발표-논의할 식품안전정보원의 연구결과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첨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5차 회의 참석자 명단

<별첨 1> 발표자료-1 :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ppt자료 pdf)

<별첨 2> 발표자료-2 :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한글파일 pdf)

<6차 회의결과 요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6차회의

- 일 시 : 2019년 4월 4일(목) 14:00~17:00
- 장 소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1인(불참 5), 위원장 및 연구진
*발표자 :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연구본부장, 김원용 선임연구원

□ 회의 주요 결과(요지)

1. 5차회의 회의록 검토

- 5차회의 본의제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발표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한 발표자(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를 회의록에 명기하기로 함
- 현재 회의록 초안에는 주로 식품업계의 의견이 기록돼 있는데,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도 보완(발표내용 포함)해 균형있게 정리되도록 하고 추후 6차회의 회의록과 함께 검토-승인하기로 함

2. [본의제]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점과 관련, 본 협의회 요청으로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의 이주형 연구본부장, 김원용 선임연구원이 참석해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이후 질의응답 및 논의가 이어짐
- 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
 - 본 연구(『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이 이뤄지지 전에 식약처에서 발주해 경쟁입찰을 거쳐 정보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음
 - 주요 연구내용은 GMO표시제도 개선 관련, 해외 현황과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며 통상마찰 문제는 연구대상이 아니었음
 - 이미 연구가 완료돼 최종보고서가 식약처에 제출되었으며 공개 문제는 식약

처에서 정할 일이나, 향후 당분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보원 김원용 선임연구원(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 :
 - 발표내용은 별첨 발표자료(『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참조
- 연구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주로 의견이 오간 주제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 지난번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때 청와대에서는 관련 연구에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정보원의 연구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정보원 연구자는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국민청원에 참여한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
 - 정보원의 이번 연구에 편익 부분은 중요한 것이 다 포함되지 않은 것 같으며 업체의 경우 GMO 관리비용이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 이에 대해, 연구자는 본 연구는 계량화할 수 있는 비용에 따른 편익을 분석한 것으로 정성적 요소는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
 - 향후 완전표시제 도입시 별어질 일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한 점이 많겠지만, 대만처럼 새로 표시제도를 도입한 외국사례를 조사하면 비용/편익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날텐데 실제 대만의 경우 어떠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연구자는 대만 사례는 새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 따른 비용/편익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었으며, 표시제도 개선 후 GMO 제품과 Non-GMO 제품이 분리되어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답변
 - 표시제도가 바뀔 경우 업체에는 포장지 폐기비용이 대단히 크게 발생하며 그런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들은 식약처에 표시제 변경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둘 것을 요구한다는 발언
 - 제품에 표시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완전표시제 도입시 식품업계에서는 검사비나 관리운영비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해, 현재 소비자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완전표시제의 경우 '원료기반' 완전표시제이며 근거도 잔존GM DNA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사가 아니라 사용원료에 대한 이력추적을 근거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업체에게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란 반론
 - 완전표시제 도입시 식품업계 매출 감소액이 약 1.8조원대라면 한 해에 매출

액 1조원대 대기업 2개가 사라지는 것에 해당한다는 의견. 반면,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적절히 분담한다면 1조원대의 비용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

- 구분유통비용 문제, 대부분의 경우 원재료의 non-GMO 대체가 쉽지 않다는 발언 등과 관련, 다음 회의에서 식품업계측이 발표할 때 업체의 표시제 관련 비용의 구체적인 실상, GMO 세계시장 및 한국의 수입비중 현황 등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식품업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함

4. 다음 회의 : 7차회의 일정 및 의제

- 4월 18일(목) 오후 2시. 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

- 주요 의제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 식품업계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비용 증가, 식품가격 인상 등 식품업계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완전표시제 시행시 식품업체의 책임문제, 실행가능성, 효과 등
- 이러한 점들의 실상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조사연구 결과 발표 및 논의
 - 식품업계 위원들이 논의해 발표자를 선정하고, 발표자는 발표자료를 5일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줄 것

- 전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질의·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식약처에 보낸 데 대해 답변하기 위해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7차 회의에 참석 예정
 - 소비자시민단체의 질의·요청에 대해 식약처 과장이 답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식품업계 위원들은 함께 참석해도 되고,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
 - 추후 식품업계측에서 논의해 참석 여부 결정하기로 함

- 7차 회의 진행순서

- 1) 14:00 - 15:00 식약처 과장과의 간담회
- 2) 15:00 - 17:30 본회의
 - 본회의 전에 식약처 과장과의 간담회를 1시간 정도 갖고, 그로 인해 줄어드는 본의제 논의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회의시간을 30분 연장
 - 소비자시민단체 위원들은 2시부터 회의 참석
 - 식품업계 위원들은 자체 논의 거쳐 2시 간담회부터 참석할지, 아니면 3시 이후의 본회의만 참석할지 결정

<첨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6차 회의 참석자 명단

<별첨 1>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연구』 발표자료

<7차 회의결과 요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7차 회의

- 일 시 : 2019년 4월 18일(목) 14:00~17:40
- 장 소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3인(불참 3), 위원장 및 연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완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남혜선 연구관
*발표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부장

□ 회의 주요 결과(요지)

1. 간담회. 소비자·시민단체의 서신 관련 답변 및 질의응답 (14:00 ~ 15:20)

-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오정완 과장, 남혜선 연구관
 - * 소비자시민단체의 질의서로 이뤄진 자리이나, 식품업계 위원들도 동석해 참관하고 진행 중에 일부 의견제시도 함

□ 소비자·시민단체의 서신 및 질의·요구에 대해 식약처 오정완 과장 답변

- 이전의 검토협의회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 --
[답변] 회의록이 없어 제출할 수 없었으며, 회의 결과는 다음 회의 때까지 드리도록 하겠음
- 대통령 공약에 대한 식약처 국장의 발언 보도내용에 대해 --
[답변] 당시 국장의 발언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었음. 표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식약처에서 사전에 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으며,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달라는 것이 식약처의 기본 입장임
- 협의회 관련 문제. 표시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며 국민청원도 이뤄졌는데, 그런 정책과제를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용역에 맡기는 것은 면피,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 하는 질의 등에 대해 --
[답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완전표시제 등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함께 검토돼야 할 점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최대한 사

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운영 용역을 맡기게 된 것임. 협의회와 관련한 식약처의 입장은 이미 협의회 출범시 보도자료 통해 밝혔듯이 추후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충실히 정책(표시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임

-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의 소통이 중요함. 식약처 담당 공직자가 협의회에 참여해 어떤 입장을 갖고 발언하자는 않더라도 최소한 협의회에 배석해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과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대해 --

[답변] 협의회 위원들의 모아진 의견으로 요청하면 배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

*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위원들은 식약처 공직자의 배석을 요구함
식품업계 위원들은 추후 논의해서 알려주기로 함

- 식품안정정보원의 연구보고서 공개 문제에 대해 --

[답변] 협의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의회 활동이 끝난 후에 공개하려는 방침이었음. 만일 협의회 논의에 지장이 없고 협의회에서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음.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협의회 위원들에게만 참고용으로 연구보고서 전문을 협의회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겠음

2. 협의회 본회의 (15:30 - 17:40)

- 의제 : GMO표시제도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입장
-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부장이 『GMO표시제도에 대한 산업계 입장』에 대해 발표자료(별첨 pdf파일 참조)를 중심으로 발표
-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부장의 <발표자료> 주요 내용 :

『GMO표시제도에 대한 산업계 입장』

I.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입장

1. 소비자의 올바른 알 권리가 더 먼저임
2. 서민경제를 더 힘들게 함
3. 국내 식품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됨
4. GMO완전표시제, 정부의 책임문제가 남음

II.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에 대한 입장

1. 국가마다 다른 현실을 인정해야 함
2. 원료 공급의 어려움과 가격 상승이 필연적
3. EU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III. Non-GMO 표시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

1. 소비자의 오인, 혼란 가능성이 큰 문제
2. Non-GMO 표시기준 완화는 완전표시제와 모순

○ 위 내용 발표 후 질의응답 및 논의 이어짐

- 주로 GMO 표시제도가 식품산업계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인지 하는 점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런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됨

○ 위원들 간에 오간 주요 논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산업계 측 발표자료에서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 위해 안전성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과학적 근거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도 포함돼 있음
- GMO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지 않다고 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소비자의 우려가 있으니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협의회에서 논의해 결론내릴 수 없는 문제이니 앞으로 서로 언급하지 말자는 것임
- 식품산업계 측은 완전표시제 도입시 막대한 추가비용 소요, non-GMO 원재료 구입난 등으로 해당분야 업계의 몰락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심각히 우려하는 설명
- 경제 전반 혹은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영향 얘기하니 와닿지 않고 신빙성이 약한데, 완전표시제 도입시 식품업체나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겠음
- 완전표시제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거부 입장의 근거로 제시한 네가지 사항 중 앞의 두가지(1. GMO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알권리 2. 서민경제에 부담, 양극화)는 설득력 약하고 “3. 국내 식품업계의 역차별” 문제와 “4. 표시에 따른 기업의 책임” 문제는 공감이 감. 그 구체적인 실상을 알려주면

대책을 함께 검토-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

- 시민단체 쪽에서는 업계의 부담 과종 등으로 곧바로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 도입 등 접점을 찾아 중간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있고 그런 자세로 임하려고 함. 식품업계에서도 현행 표시제도 고수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향후 협의의 의미가 있을 것임
-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실질적 영향에 대해 개별 식품업체 차원의 구체적인 데이터나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해주면 향후 상호 이해와 접점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자료를 만들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함
- 다음 번에는 완전표시제 도입시 역차별 등 식품업계의 애로점을 신빙성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국내 식품업계를 보호하고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식품업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안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발표자료 준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식품업계 위원들 간에 논의해 정하기로 함

3. 6차 회의 회의록 검토 및 승인

- 회의시간 부족으로 6차회의 회의록 검토-승인 절차 생략. 사전에 이메일로 회람한 6차회의 회의록 내용에 대해 각자 확인하고 이의(수정-보완사항)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알려주기로 함

4. 다음 회의(8차 회의) 일정 및 의제

- 5월은 연휴 및 각종 행사, 회의 발표자료 준비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니, 당초 예정됐던 5월 2일은 건너뛰고, 다음 회의는 5월 16일에 열기로 함
 - 그때까지 식품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논의해 다음 회의 주제에 대한 발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주기를 요청
- 5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갈등 해결센터 회의실
- 주요 의제 (식품업계 발표자료의 초점)
 - GMO 완전표시제 도입시 식품업체 및 식품업계에 실제로 미치게 될 구체적인 영향과 문제점, 특히 역차별 등 국내식품업계가 겪게 될 애로점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데이터-자료와 함께 제시

- 소비자시민단체에서 추구하는 완전표시제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방안, 필요한 조치 등)
- 식품산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표시제도 개선방안 제안 또는 소비자시민 단체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제안 등

<첨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7차 회의 참석자 명단

<별첨> 발표자료 : 『GMO 표시제도에 대한 산업계 입장』 (pdf파일)

<8차 회의결과 요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8차 회의

- 일 시 : 2019년 5월 16일(목) 14:00~17:30
- 장 소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 참석자 : 협의회 위원 13인(불참 3), 위원장 및 연구진

□ 회의 주요 결과(요지)

■ 7차 회의 회의록 검토

- 회의록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이후 수정보완해 승인하기로 함

■ 협의회 회의에 식약처 담당관 배석 문제

- 지난 회의 때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협의회 논의 내용과 배경 등을 공유하기 위해 식약처 담당자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했고, 식품업계 측도 동의하면 위원장이 식약처의 배석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음. 하지만, 식품업계측의 의견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해 알려주기로 함

■ 협의회 운영규정 논의 -회의 내용 공개 수준 여부

- 일반적인 공개 행사에서 소비자시민단체 측 위원이 GMO협의회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던 점과 관련, 협의회 논의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짐
-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함

“협의회 회의 진행은 비공개로 하되,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대표하는 단체나 분야에서의 이해와 의견수렴 차원에서 각 단체 내부에서는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되, 언론이나 일반 대중에 공개할 때는 개인정보 노출을 금하고, 승인된 회의록에 나온 내용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과거 검토협의체 결과 자료 검토

- 식약처에서 제공한 과거 검토협의체 회의결과(1~32회) 내용에 대해, 윤철한 위원의 설명을 듣고 검토함

○ 본 의제 논의

[주제]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업계의 영향, 애로점 및 대책

- 식품산업협회 명의로 작성된 『GMO 표시제도 확대 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자료를 토대로 윤종복 위원(인그리디언코리아 전무)이 발표하고 위원들간 논의 이어짐

발표내용 요지(고딕체)

◦ 원료수급의 문제

-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 수입하며, 특히 대두는 5.4%, 옥수수 0.8%의 현저히 낮은 자급률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주요 곡물 수출국의 GM재배 면적 증가 추세로 Non-GMO작물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며, '비의도적 혼입치 3% 미만'기준을 지키는 것이 버거워지고 있음
- Non-GMO 교역량 부족으로 일부 한국기업은 수입선을 유럽으로 전환하였으나, 작황 부진, 유통시설 미비, 강화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인해 GMO 대비 30% 높은 프리미엄으로 수급 중
- 국내 적합한 Non-GMO 작물이 생산되더라도 수출 관련 시설 미비로 수입 불가 한 상황 발생 가능

◦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역차별

-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친 식품의 경우 GMO 원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 구분유통증명서로 GMO 원료 사용 여부 판단
-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를 위해 파종/생육/수확/보관/운송/선적까지의 전 과정을 GM 작물과 구분관리가 필요하나(프로세스별 구분유통증명서 발급)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실정
- 원료기반 GMO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GMO 원료를 사용한 수입식품이 Non-GMO로 둔갑하여 저가격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유통될 가능성 존재.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의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증명서 및 SGS 등 제3의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 성적서가 있음. 이에 따라 국내산 제품만 표시를 엄격히 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불리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역차별 현상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

* 발표내용 전문은 본 회의록에 별도로 첨부 :『GMO 표시제도 확대 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ppt 자료 및 한글파일(pdf)

□ 논의 : 향후 협의진행 및 접점 도출방법에 대한 논의

- 윤종복 위원의 발표 후 완전표시제 도입 시 식품산업계에 미칠 실질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음
- 소비자시민단체측 위원들은 완전표시제 도입시 식품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문제점의 실상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기 힘들거나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응 이었음
- 차후 논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산업계와 소비자시민단체 각 그룹별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된 공동 입장을 마련하여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함
- 소비자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완전표시제 자체에 대해 총론적으로 접근하면 양측간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음엔 완전표시제 세부 내용이나 쟁점 등 각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질문지를 소비자시민단체 측이 마련하여 식품산업계 측에 제시하고 식품산업계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가부 입장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논의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이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짐

□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산업계 양측 그룹별 회의 진행(17:00~17:30)

- 위 제안에 대해 양측 위원들은 내부 협의를 위해 그룹별로 회의를 갖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 가짐

□ 논의 결과 :

- 향후 GMO 표시제 문제에 대해 양측간 접점을 찾고 최대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완전표시제 세부 내용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해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시민단체 측이 완전표시제 세부 사항 및 쟁점 등 각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질문지를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함
- 소비자시민단체 측이 마련한 질문지를 식품산업계 측에 전달하면 식품산업계는 의견을 수렴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로 함
- 다음 회의 전에 위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 다음 10차 회의에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접점을 모색하고 합의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함

* 발표내용 전문은 본 회의록에 별도로 첨부 :『GMO 표시제도 확대 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ppt 자료 및 한글파일(pdf)

□ 논의 : 향후 협의진행 및 접점 도출방법에 대한 논의

- 윤종복 위원의 발표 후 완전표시제 도입 시 식품산업계에 미칠 실질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음
- 소비자시민단체측 위원들은 완전표시제 도입시 식품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문제점의 실상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기 힘들거나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응 이었음
- 차후 논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산업계와 소비자시민단체 각 그룹별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된 공동 입장 마련하여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함
- 소비자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완전표시제 자체에 대해 총론적으로 접근하면 양측간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음엔 완전표시제 세부 내용이나 쟁점 등 각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질문지를 소비자시민단체 측이 마련하여 식품산업계 측에 제시하고 식품산업계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가부 입장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논의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이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짐

□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산업계 양측 그룹별 회의 진행(17:00~17:30)

- 위 제안에 대해 양측 위원들은 내부 협의를 위해 그룹별로 회의를 갖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 가짐

□ 논의 결과 :

- 향후 GMO 표시제 문제에 대해 양측간 접점을 찾고 최대한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완전표시제 세부 내용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해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우선 소비자시민단체 측이 완전표시제 세부 사항 및 쟁점 등 각론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질문지를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함
- 소비자시민단체 측이 마련한 질문지를 식품산업계 측에 전달하면 식품산업계는 의견을 수렴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로 함
- 다음 회의 전에 위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 다음 10차 회의에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접점을 모색하고 합의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함

별첨 2. 운영규정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운영규정

2018년 4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 5월 8일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분야 업계와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 위원들 간 협의로 아래와 같은 운영규정을 마련해 충실히 효과적인 협의를 통해 GMO 표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나가도록 한다.

1. (목적) GMO 표시제도에 관해 주요 당사자그룹이 참여하여 사회적 협의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명칭) 본 협의체의 명칭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라고 한다. (이하 협의회로 약칭)
3. (구성) 협의회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요 당사자그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업계 대표 8인,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8인 등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참석 단체와 대표자는 각 분야 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며, 해당 분야의 추천·선정 절차를 거쳐 <별표1>과 같이 정한다.
 - ③ 위 ②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단체의 교체위원이 대신 참석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위원은 해당 위원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위원장) 협의회 위원장은 <별표1>의 갈등해결 전문가가 맡아 회의 등 협의회의 제

반 활동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끌도록 하고, 모든 위원은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 한다.

5. (소위원회·자문단) 협의회 운영과정에 필요할 경우 산하에 실무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균형있게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운영기간) 협의회는 2018년 12월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해 2019년에 계속 운영하며,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충실한 협의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7. (진행 수칙) 모든 위원은 협의회 운영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협의과정에서 각 위원은 상호존중의 자세를 견지하며 발언_경청하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검토 가능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모든 논의가 최대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 ② 필요할 경우 전문가자문단의 사실확인 작업 등을 거쳐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쟁점을 해소하고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협의회 안팎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원만한 협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삼가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판단 또는 위원회 의결로 경고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의결방법) GMO 표시제에 대한 최종 결론 등 주요 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한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대외 공개) 협의회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각 위원들은 소속 분야기관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하되, 다만 원만하고 효과적인 협의 진행을 위해 대외적으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 ① 협의회 내부의 논의내용이나 진행상황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론 등 외부에 공

표하는 것은 위원장 및 연구진의 언론브리핑 등으로 창구를 단일화한다.

- ② 위원 개인이나 단체 차원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재량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과 논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하도록 한다.
- ③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발언자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④ 협의회 회의 중에 녹음은 가능하나, 다른 위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녹음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 ⑤ 그 외 협의회 활동사항의 공개문제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사안 별로 위원장의 판단 또는 협의회 차원의 논의와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10. (회의록 관리) 협의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공식 회의의 경우 연구진은 매회 주요 요지 중심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에서 위원들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
11. (활동 결과) 협의회 활동 결과, 위원들 간 협의를 토대로 합의사항 또는 결론이 도출되면 권고안의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12. (활동 종료) 협의회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해산 또는 일시 중단하고자 할 경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년 12월 28일